

형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충직하고 겸손한 도리이다. 그런데 감사의 본뜻에 악의가 있어서 말로 다룰 수 없는 경우는 수형리(首刑吏)의 문서로서 죄수를 호송하고 동시에 사직서를 써서 같이 제출케 한다. 감사가 굽혀서 사과하면 달갑지 않지만 정사를 볼 것이나, 만약 계속 무례하면 사직서를 세번 제출하여 거취를 결정한다.

감사가 만일 겉으로는 용서하는 체하고 속으로는 오히려 노여움을 품고 있다가 장차 고과(考課)할 때에 가장 낮은 평점을 주려고 하는 경우에는 즉시 인부(印符)를 끌러 예리(禮吏)를 시켜 감영에 가서 바치도록 하고 관직을 버리고 집으로 돌아가야 하며, 구차스럽게 쭈그리고 앉아서 욕됨을 스스로 취해서는 안된다.

상관의 명령이 공법(公法)에 어긋나고 민생에 해를 끼치는 것이면 굽히지 말고 꺾듯이 자신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

명나라의 조예(趙豫)가 송강부(松江府)를 맡고 있는데, 청군어사(淸軍御史) 이립(李立)이 와서 군대의 수를 늘리는 데만 몰두하여 백성들을 마구 동원하였다. 이에 조금이라도 항변하면 독하게 곤장을 치니, 인심이 크게 소란해지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이 천여 명이나 되었다. 또한 소금 생산을 맡은 관리가 소금 굽는 인부들도 끌어모으니 백성들에게 크게 해가 되었다. 조예는 글을 올려 이 모든 일들에 관해 적극적으로 논하여, 모든 사람이 살아날 수 있게 되었다.

살피건대 어사나 상관의 나쁜 정사에 관해 수령이 상부에 보고하여 적극적으로 논할 수 있었으니, 명나라의 이 법은 매우 좋은 것이다. 우리나라

라는 체통만을 따져, 상관이 함부로 불법을 저질러도 수령이 감히 한마디도 말하지 못하여 민생의 초췌함이 날로 더해가고 있다.

박환(朴煥)이 금구현령(金溝縣令)으로 있을 때 청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중국 사람을 찾아 보내도록 요구하였는데, 조정에서 감히 거절하지 못하고 각 군읍에 지령을 내렸다. 모든 군읍에서는 중국 사람을 살살이 찾아내지 못하면 중한 견책을 받을까 두려워 수색하느라고 어수선했다. 박환은 탄식하면서 “나는 허리에 찬 관인(官印)의 끈은 풀 수 있으나 이것만은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우리 고을에는 찾아낼 중국 사람이 없다고 보고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그 고을에 사는 중국 사람들만은 무사할 수 있었다. 이 일을 보고 들은 모든 사람들이 그 의리에 탄복하였다.

예(禮)는 공손하지 않으면 안되고 의(義)는 결백하지 않으면 안되니, 예와 의가 아울러 온전하고 온화한 태도로 도(道)에 맞아야 군자라고 한다.

사대부의 벼슬살이하는 법은 언제라도 벼슬을 버린다는 의미로 ‘버릴 기(棄) 한 자를 벽에 써붙이고 아침저녁으로 눈여겨보아야 한다. 행동에 장애가 있거나, 마음에 거슬리는 일이 있거나, 상관이 무례하거나, 내 뜻이 행해지지 않으면 벼슬을 버려야 한다. 감사가 내가 언제든지 벼슬을 가볍게 버릴 수 있는 사람이며 쉽게 건드릴 수 없는 사람임을 알고 난 후에야 비로소 수령 노릇을 할 수 있다. 그렇지 않고 부들부들 떨면서 자리를 잃을까 저어하여 황송하고 두려워하는 말씨와 표정이 드러나면, 상관이 나를 업신여겨 계속 독촉만 하게 될 것이니 오히려 그 자리에 오래

있을 수 없게 된다. 이것은 필연의 이치이다. 그러나 상관과 하관의 서열이 본래 엄한 것이니, 비록 사의(辭意)를 표명하여 관인을 던지고 결연히 돌아가는 지경에 이르더라도 말씨와 태도는 마땅히 온순하고 겸손하여 털끝만큼이라도 울분을 터뜨리지 않아야 비로소 예에 맞다고 할 수 있다.

이웃 고을과는 서로 화목하고 예의있게 대하면 후회가 적을 것이다. 이웃 고을 수령과는 서로 형제의 우의가 있으니, 저쪽에서 실수가 있더라도 서로 틀어짐이 없도록 해야 한다.

양나라 대부 송취(宋綬)가 초나라와 경계가 맞닿아 있는 곳의 현령으로 있을 때의 일이다. 양쪽에서 모두 오이를 심었는데 양나라 사람은 힘써 자주 물을 주곤 하여 오이가 잘 되었는데, 초나라 사람은 게을러서 물을 자주 주지 않아 오이가 잘 자라지 않았다. 그런데 초나라 수령이 양나라의 오이가 잘된 것이 싫어 밤중에 몰래 끊어버려 양나라 오이 중에 말라버린 것이 생겼다. 양나라 정장(亭長)이 보복으로 초나라 오이를 끊어버리려고 하자, 송취는 “이는 재앙을 같이하는 것”이라며 말리고는 사람을 시켜 밤중에 몰래 초나라 오이밭에 물을 주라고 하였다. 초나라 정장이 매일 아침 밭에 나가 보면 오이에 이미 물이 주어져 있고, 또한 오이가 날로 좋아지고 있었다. 살펴보니 양나라 정장이 그렇게 한 것이었다. 초나라 수령이 대단히 기뻐하여 이 일을 초나라 왕에게 보고하였더니, 초나라 왕도 양나라 사람의 남모르게 행한 일을 기뻐하여 크게 사례하고 양나라 왕과 우호를 맺었다.

‘전임자와 후임자의 교대[交承]’에는 동료로서의 우의가 있어야 하니, 내가 내 후임자에게 당하기 싫은 일은 나도 나의 전임자에게 하지 않아야 원망이 적을 것이다.

전임자와는 동료로서의 우의가 있기 때문에 교대할 때에 옛사람들은 후덕함을 좇아, 전임자가 비록 탐욕스럽고 불법을 저질러서 그 해독이 가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화평하고 조용히 고쳐서 전임자의 행적이 폭로되지 않게 하는 데 힘썼다. 만일 급박하고 시끄럽게 일일이 지난 정사를 뒤집고 큰 추위 뒤에 따뜻한 봄이 온 것처럼 자처하여 혁혁한 명예를 얻으려고 한다면, 이는 그 덕이 경박할 뿐 아니라 뒤처리를 잘하는 것이 아니다.

전임자의 가족이 아직 떠나지 못하여 읍내에 남아 있으면, 떠날 채비의 여러 일을 마치 자기 일처럼 마음을 다해 보살피야 한다. 혹시 경박한 아전들이 전임자를 배반하여 가증스런 태도를 보이면 그러지 말도록 깨우쳐주고, 그래도 너무 심하게 구는 자가 있으면 엄하게 그 죄를 다스려야 한다.

전임자의 흠이 있으면 덮어주어 나타나지 않도록 하고, 또 죄가 있으면 도와주어 죄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만일 전임자가 공급에 손을 댔거나 창고에 쌓아둔 곡식을 축내었거나, 혹은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부정행위를 했다면, 들추어내지 말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배상하도록 하고, 기간이 지나도 보상하지 않으면 상사와 의논한다.

혹 전임자가 세력 있는 집안이나 호족(豪族) 출신이어서 자신의 강함을 믿고 일처리가 이치에 어긋나고 뒷일을 생각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강경하고 엄하게 대응하여 조금이라도 굽혀서는 안된다. 비록 이 때문에 죄를 얻어 평생을 불우하게 지내더라도 머뭇거리서는 안된다.

후한의 호문공(胡文恭)이 호주(湖州)를 맡아 다스릴 때의 일이다. 전임자인 등(滕)공이 크게 학교를 세워 수천만금의 돈을 쓰고도 일을 마치지 못하고 파직되어 갔다. 여러 소인배들이 등공이 돈을 지출한 것이 명백치 못하다고 비방하면서 통판(通判) 이하가 인계 장부에 서명하기를 거부하였다. 그래서 호문공이 “그대들이 등공을 보좌한 지 오래 되지 않았는가? 그에게 잘못된 점이 있었다면 왜 일찍 충고하지 않고 가만히 팔짱만 끼고 보고 있다가 그가 떠날 때를 기다려 이제서야 나쁘다고 말하는가? 이것이 어찌 옛사람들의 책임을 나누어지는 뜻이겠는가?” 하니 모두가 매우 부끄러워하였다.

대체로 정사의 관대한 것과 가혹한 것, 명령과 법령의 득(得)과 실(失)은 서로 이어받고 서로 변통하기도 하여 그 잘못된 점을 해결해나가야 한다.

구양수(歐陽修)가 개봉부(開封府)를 맡았는데, 그는 전임자인 포중(包拯)의 위엄있는 정사 대신에 간단하고 편하게 순리를 따를 뿐 혁혁한 명성을 구하지 않았다. 어떤 사람이 포중의 정치를 그에게 권하자, 그는 “대개 사람의 재능과 성품은 서로 달라 자기의 장점을 살리면 일의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으니 나는 내가 능한 대로 할 뿐이오”라고 말하였다. 그는 여러 군(郡)을 거치면서 치적을 구하지 않고 관대하고 간략하

며 시끄럽지 않은 것에 뜻을 두었다. 따라서 그가 벼슬살이한 곳이 큰 군이었지만 부임한 지 보름이 지나면 벌써 일이 열 가지 중에서 대여섯 가지가 줄어들고, 한두 달 후가 되면 관청이 마치 절간처럼 조용해졌다. 어떤 사람이 “정사는 관대하고 간략하게 하는데 일이 해이해지거나 중단되지 않은 것은 무엇 때문인가?”라고 묻자, 그는 “방종한 것을 관대한 것으로 알고, 생략하는 것을 간단하고 편한 것으로 알고 있으면, 해이하고 중단되어 백성이 폐해를 받는 것이다. 내가 말하는 관대하다는 것은 가혹하게 급히 서둔다는 것이 아니며, 간단하고 편하다는 것은 번잡스럽지 않다는 것뿐이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는 일찍이 “백성을 다스리는 것은 병을 치료하는 것과 같다. 백성을 다스리는 데는 관리의 재능 여부와 시책이 어떠한가를 물어야 한다. 백성이 편안하다고 하면 곧 그가 훌륭한 수령이다”라고 말하였다.

4. 보고서[文報]

공적으로 보내는 문서는 아전들에게 맡기지 말고 꼼꼼히 생각해서 자신이 직접 써야 한다.

『다산필담』에 말했다. “지금 사람들은 주자의 저술에서 오직 서간(書簡)만을 취하여 성리설(性理說)만 보고 한 구절을 따다가 글에 써먹으려 하며, 주자 학문의 현실적인 면은 주자가 관에 있으면서 쓴 공문들을 모은 「공이제편(公移諸篇)」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한다. 수령 된 자는 마땅히

「공이제편」을 책상에 놓아두고 때때로 읽고 외우며 본떠서 속된 벼슬아치가 되는 것을 피해야 한다.”

한위공(韓魏公)은 행정실무에 근면하여 장부나 문서를 살피고 따지는 일을 모두 직접 하였다. 좌우의 누군가가 “공은 지위가 높고 나이도 많으실 뿐 아니라 공명 또한 높아 조정에서 한 고을을 맡아 쉬도록 한 것입니다. 조그만 일까지 직접 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하자, 그가 “내가 수고로움을 싫어하면 아전과 백성들이 폐를 입을 것이다. 또 녹봉이 하루 만 전(錢)인데 일을 보지 않으면 내가 어찌 편안할 것이냐?”고 답하였다.

명성과 지위가 자못 높은 사람들이 고을을 맡으면, 대강만 파악하고 조그만 일은 직접 하지 않고 오직 풍류를 즐기려고만 하니 이것이 옳겠는가?

공문의 격식과 문구가 경사(經史)와는 다르기 때문에 서생(書生)이 처음 부임하면 당황하는 일이 많다.

이두(吏讀)는 신라의 설총(薛聰)이 만든 것이라고 한다. 그중에는 난해한 것도 있다. 수령은 경관(京官)으로 있을 때 아는 사람에게 배워서 스스로 이해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또한 내용을 모두 서술한 것을 ‘등보(騰報)’라 하고, 요약만 기록한 것을 ‘절해(節該)’라고 한다. 모름지기 평소에 상세히 익혀두어서 서툴다는 비난을 듣지 말아야 한다.

『상산록(象山錄)』에서 말했다. “평안도와 황해도에 부임하는 경우는 마땅히 중국의 공문 서식을 보고 그 문구들을 알아둬야 한다. 건륭 말년(1790년대초)에 요동의 봉황성(鳳凰城) 장군이 의주부윤(義州府尹)에게 공

문을 보내 칙사(勅使)가 늦어진 까닭을 알려왔다. 그 문서가 황주(黃州)에 도착하도록 관찰사 이하 모두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해 중앙에 보고하지 못한 까닭에 거의 사고가 날 뻔하였다. 만약 평소에 사역원(司譯院)의 문자를 섭렵하고 공문의 문구들을 익혔다면 어찌 당황할 까닭이 있었겠는가. 우리나라 사대부들이 실용문자를 익히지 않아서 생긴 폐단이 이와 같았다.”

폐단을 보고하고, 어떤 것을 청구하며, 상사의 지시사항을 거부하는 등의 문서는 반드시 문장이 조리가 있어야 하고 성의를 간절하게 보여야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천하에 가장 천해서 의지할 데 없는 것도 백성이요, 천하에 가장 높아서 산과 같은 것도 백성이다. 요순(堯舜)시대 이래로 성현들이 서로 경계한 바가 백성을 보호하려는 것이라, 이것이 모든 책에 실려 있고 사람들이 익히 알고 있다. 그러므로 상사가 비록 높아도 수령이 백성을 머리에 이고 싸우면 대부분 굴복할 것이다. 정택경(鄭宅慶)은 바닷가 출신의 무인이지만 언양현감(彦陽縣監)이 되어 백성을 머리에 이고 싸우자 감사가 굴복하였고, 의주 출신인 안명학(安鳴鶴)은 강진현감(康津縣監)이 되어 백성을 머리에 이고 싸워서 감사를 굴복시키고 그것 때문에 명성이 퍼져 벼슬길이 열렸다. 본래 백성의 이익을 위한 것이지만 수령에게도 이로운 것이다.

옛날에 한 승지(承旨)가 서도(西道)의 수령으로 나갔는데 파직을 당할까 겁을 내 마땅히 싸워야 할 경우에도 싸우지 않자, 감사가 그를 비루하

게 보고 폄하해서 쫓아버렸다. 이같은 일을 나는 많이 보았다. 백성을 위해서 건의할 경우에는 마땅히 이롭고 해로운 점을 상세히 진술하되, 위에 있는 사람의 느낌에 부합하도록 지성을 다해야 한다. 두번 세번 해도 성사되지 않으면 결연히 거취를 정해야 한다. 비록 이 일로 파면을 당해도 앞길이 다시 열릴 것이다. 앉아서 백성의 곤경을 보고만 있다가 마침내 죄책에 빠지는 경우와는 크게 다를 것이다.

사람의 목숨에 관한 문서는 지우고 고치는 것을 조심해야 하고, 도적의 옥사(獄事)에 관한 문서는 봉합을 엄중히 해야 한다.

내가 장기(長耆)로 귀양가 있을 때 본 것이다. 한 아전이 살인을 했는데, 여러 아전들이 짜고 간계를 부려 감시장을 온통 고쳐버렸다. 감영으로부터 판결문이 오자 현감이 깜짝 놀라고 의심했지만, 결국 간계를 밝혀내지 못하고 살인범을 석방하고 말았다. 감영의 판결문이 내가 보고한 것과 다를 경우에는 급히 감영에 가서 원장을 찾아 읽어보아야지 단지 의심만 품고 그칠 일이 아니다.

큰 도적은 그 일당이 널리 퍼져 있으며 군교나 형리들이 그들의 첩자 일지도 모른다. 탐문과 수색에 관한 문서는 응당 비밀로 하고 거둬 봉해서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웃 고을에 보내는 문서는 문장을 잘 만들어서 오해를 사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웃과 사이 좋게 지내라는 것은 옛사람의 훈계이다. 문벌이나 덕망이 비슷하여 서로 양보하기를 싫어하는 경우에 문제가 생기면 서로 앞서고자 하다가 반목하게 되고 모두에게 알려져 웃음을 사게 되니, 예의가 아니다. 공경하면서 예의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공감하게 될 것이다. 또한 역참(驛站)의 책임자, 목장(牧場)의 감독관, 변방의 무장들은 비록 문벌은 낮지만 모두 관청의 책임자이므로 마땅히 서로 존경하고 언사를 조심해 한결같이 공손하면 좋지 않겠는가.

위로 올리고 밑으로 내려보내는 문서들을 기록해 책자를 만들어 뒷날 참고하도록 하고, 기한이 정해진 것은 따로 작은 책자를 만들어둔다.

상사에게 보고한 것들은 책자를 만들고, 백성들에게 전한 명령도 책자로 만들되 글자를 바르게 써서 항상 책상 위에 비치해둔다. 일상적이거나 긴급하지 않은 문서들은 반드시 수록할 필요가 없다.

5. 공물 바치기[貢納]

재물은 백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며, 이것을 받아서 나라에 바치는 자가 수령이다. 아전의 부정을 잘 살피기만 하면 비록 수령이 너그럽게 하더라도 폐해가 없지만, 아전의 부정을 잘 살피지 못하면 비록 수령이 엄하게 하더라도 아무런 보탬이 안된다.

백성들은 좁쌀·쌀·실·삼 등을 내어서 위를 섬기는 것을 자기들의 본분으로 여기기 때문에 까닭없이 납부를 거부할 리는 없다. 늘 보면 어리석고 우둔한 수령들 가운데에 백성을 어루만지고 돌본다고 하는 자는 으레 상납(上納)의 기한을 어기고, 나라에 이바지한다고 하는 자는 으레 백성들의 뺨에 사무치도록 마구잡이로 빼앗는다. 진실로 현명한 수령은 너그럽이 하되 기한을 어기지 않아 상하 모두가 원망이 없으니, 그 이치는 쉽게 깨칠 수 있을 것이다.

『정잠(政箴)』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세금 징수는 흔들리지 않아야 하니 이는 세금을 징수하면서도 어루만지고 돌보는 것이며, 형벌은 착오가 없어야 하니 이는 형벌하면서도 교화하는 것이다. 봄에 궁한 백성 구제는 마치 자식처럼 하고, 가을에 거두어들이기는 마치 원수처럼 해야 한다. 한 이익을 일으키는 것은 한 폐해를 제거하는 것만 같지 못하고, 한 일을 만드는 것은 한 일을 감하는 것만 같지 못하다. 위엄은 청렴함에서 생기고 정사는 부지런함에서 이루어진다.”

쌀과 무명베로 내는 전세(田稅)는 나라 재정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넉넉한 백성으로부터 먼저 징수하여 아전이 횡령하는 것을 없게 해야만 상납 기한을 맞출 수 있다.

오늘날 나라의 재정이 날로 줄어들어 백관의 봉록과, 중앙관청에 물품을 공급한 상인에게 지불해야 하는 쌀을 제대로 결산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 그런데도 넉넉한 백성의 기름진 토지는 모두 아전의 전대 속으로 들어가고, 조운선에 세곡을 실어 보내는 것은 해마다 기한을 어겨, 체

포되어 문초당하고 파면되어 갈리는 수령이 줄줄이 뒤를 잇고 있으나 아직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으니 애석한 일이다.

호태초(胡太初)는 말하였다. “평소에 부유하고 힘센 자들과 밀착되어 있는 고을 아전들은 해마다 이들에게는 세금을 내지 않게 하고 단지 착하고 어진 가난한 백성들에게만 기한에 앞서 재촉하고 핍박하여 세금을 내도록 한다.”

중국 역시 그러하니 이는 천하의 공통된 폐단이다.

『한암쇄화』는 세미(稅米)에 관한 조항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마땅히 호조에 납부해야 할 것이 4천 석이라면 자기 고을에서 백성으로부터 징수한 것은 1만 석도 훨씬 넘는다. 아침에 명령을 내려 저녁에 거둬들일 수 있는 넉넉한 집의 윤기 있는 입쌀은 아전이 모두 횡령한다. 토지대장에 등록하지 않은 은결(隱結)로 거두고, 혹은 궁결(宮結)이라 하여 수세장부(收稅帳簿)에서 빼버리고, 혹은 저가(邸價)로 거두고, 혹은 거짓 재결(災結)로 수세장부에서 빼버리고, 혹은 돈으로 받고, 혹은 쌀로 받는다. 이미 초가을부터 구름이 몰려가듯이 냇물이 흘러가듯이 끝내버려 속여 훔쳐 먹은 액수는 모두 아전의 전대 속으로 들어간다. 이르고 나서 나머지 토지에서 세미를 모아 나라에 내는 4천 석을 채운다. 무릇 나라에 내는 세금을 온 집안이 몰사한 집, 유리결식을 떠나 없어진 집, 홀아비, 과부, 아버지가 죽은 아들, 아들 없는 아버지, 노인, 병자, 황폐화하여 경작을 쉬는 논밭과 못쓰게 된 논, 축대가 우거지고 자갈이 뿔구는 땅 등에서 충당하고자 하니 쌀을 벗기고 뺨을 긁어내도 어쩔 도리가 없는 무리일 따름이다. 아전은 횡령한 쌀을 높은 돛배에 싣고 남으로는 제주에 가서 장사하고 북으로는 함흥에 가서 거래한다. 아전은 채색한 복을 뽕뽕거리며 저 구름과 물이 맞닿는 바다 위에 떠 있는데, 수령은 바야흐로 훌

아버지와 과부, 병든 자들을 잡아다가 독촉하니 매질이 뜰에 가득하고 칼을 씌워 가둔 자가 옥에 넘친다. 사람을 뽑아 검독(檢督)이라고 칭하고서 사방으로 풀어 보내면, 그들은 친척이나 이웃 사람들에게 징수하여 엉뚱한 해를 입힌다. 송아지와 돼지를 빼앗고, 술을 가져가니 울부짖는 백성은 길에 넘어지고 쓰러져 곡성이 하늘에 사무친다.

순조 9년(1809)과 14년에 남쪽지방에 큰 흉년이 들었는데, 나는 바닷가의 마을에 있어서 이러한 일들을 직접 내 눈으로 보았다. 이로써 보건대 백성을 다스리는 수령에게 귀중한 것은 '밝을 명(明)' 한 자뿐이다.

공물(貢物)과 토산물(土產物)은 상급관청에서 배정하는 것이다. 기존의 법도를 각별히 이행하고 새로이 요구하는 것을 막아야만 폐단이 없어질 것이다.

조계원(趙啓遠)이 수원부사(水原府使)가 되었는데, 그 고을의 약과(藥果)가 나라 안에서도 유명하였다. 인조가 병이 들었는데 당시 수라간에는 먹을 만한 것이 없었다. 환관이 사람을 보내어 수원부의 약과를 요구하자, 조계원은 “고을에서 사사로이 바치는 것은 신하로서 군주를 섬기는 체모가 아니다. 조정의 명령이 없으면 바칠 수 없다”라고 말하였다. 인조가 이를 듣고 웃으면서 “비록 임금과 신하의 사이라 할지라도 어찌 인척으로 얽힌 인정마저도 없을 것인가?”라고 말하였다.

잡세(雜稅)와 잡물(雜物)은 가난한 백성들이 무척 고통스럽게 여기는

것이니, 쉽게 마련할 수 있는 것만 나라에 납부하도록 하고 마련하기 어려운 것은 거절해야 허물이 없을 것이다.

이경여(李敬輿)가 광해군 때에 충원현감(忠原縣監)이 되었다. 어느 여름날 백성들에게 칙을 캐게 하였는데 백성들은 어디에 쓰러는 것인지 짐작조차 못했다. 다음해 봄에 종묘나 궁궐의 건물들을 새로 짓거나 보수하기 위해서 임시로 만들어진 관청인 영건도감(營建都監)에서 칙을 수천 다발 징수하자 칙값이 삼값과 같아졌으나 그 고을 백성들은 미리 마련했기 때문에 유독 편안하였다. 더욱이 내고도 남은 것은 다급한 이웃 고을에 팔아서 다른 부세(賦稅)에 충당하였다. 또 영건도감에서는 장목(長木) 수만 개를 징수하였다. 일찍이 고을 북쪽에 있는 산에 나무가 무성한 것을 보고서 특별히 벌목을 금지해두었던 이경여가 여러 상인들을 불러놓고 “너희들 가운데 저 나무들을 베어서 영건도감으로 수송할 수 있는 자에게는 그 반을 주겠다”라고 말하자, 상인들은 모두 기뻐 날뛰며 호응하였다. 이웃 고을 백성들은 장목을 마련하느라 부산하였으나 그 고을 백성들만 유독 노동의 역(役)이 없었다.

6. 차출되는 일[往役]

상급관청에서 차출하면 모두 받들어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고나 병을 핑계대고 스스로 편하기를 도모하는 것은 군자의 의(義)가 아니다.

상급관청이 차출하여 일을 시켰을 때 내가 사양하여 면하면, 그 일을 다른 사람이 해야 되니, 그 사람이 원망하지 않겠는가?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다른 사람이 하게 해서 안된다. 실제로 사고가 없으면 순응하는 것이 옳다.

차출되면 마땅히 진심으로 책임을 다해 일을 해야지 마지못해 해서 안된다.

궁묘(宮廟)의 제사 때 차출되어 제관이 되면 마땅히 재계(齋戒)하고 정성을 들여 지내야 한다.

오늘날의 제관은 제단이나 사당 곁에서 기생을 끼고 즐기기도 하고 술을 싣고 다니며 행락을 하기도 하는데, 이는 예가 아니다. 목욕재계하고 경건하고 청결하게 하는 것을 소홀히 말며, 제사 때에 오르내리고 구부리고 엎드리는 일을 함부로 해서 안된다. 더럽고 이지러진 제기(祭器)를 그대로 써서도 안되며, 상한 고기나 시어진 술을 그대로 써서도 안된다. 군자의 마음가짐이 어느 곳을 간들 진정을 다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과장(科場)에 경관(京官)과 함께 고시관으로 차출되어 나가게 되면 마땅히 한결같은 마음으로 공정하게 하며, 만약 경관이 사사로운 일을 하려고 하면 마땅히 불가함을 고집해야 한다.

수령으로서 시험관이 되면 반드시 자기 고을 유생들과 서로 짜고 사사



소과(小科) 시험장의 풍경

로운 일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몇 사람이 그런 은혜를 입는 반면 온 도의 사람이 원한을 품을 것이니 지혜로운 자는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또 수령으로서 시험관이 된 사람이 팔짱 끼고 입 다물고 허수아비처럼 앉아 있는 것도 의로운 일이 아니다. 합격자 명단을 임금에게 보고할 때는 시험관도 그 끝에 서명하게 되어 있어, 만약 경관이 사사로운 일을 하였으면 그 죄를 함께 나누어져야 하니, 시험관이 되어 어찌 자리만 차지하고 있겠는가? 경관이 보잘것없는 글을 뽑으려 하면 다투어야 하고, 좋은 글을 버리려 해도 다투어야 하며, 또 뇌물을 받은 흔적이 있으면 다투어야 하고, 사사로운 정을 둔 흔적이 있어도 다투어 반드시 공정하고 엄정하게 심사하여 합격자 명단을 작성해야 많은 사람들이 찬양할 것이다. 무릇 수령이 된 사람의 재능과 도량이 적으면 명예가 한 고을에 그치겠지만, 크면 명성이 한 도에 가득 차는 바, 그의 인품은 여기에서 정해진다.

사람의 목숨에 관계되는 옥사(獄事)의 검시관(檢屍官)이 되기를 피하려 하면, 나라에는 그것을 다스리는 일정한 법률이 있으니 이를 어겨서는 안된다.

『무원록(無冤錄)』의 주(註)에 “검시에는 정해진 기한이 있으니 조금이라도 늦춰서는 안된다. 혹 같은 도의 이웃 고을 수령들이 검시하기가 어렵다면 다른 도의 수령에게 공문을 보내어 검시하기를 청한다”고 하였다. 옛날에 우리나라도 이렇게 하였지만 지금은 폐지되었으니 마땅히 이치에 합당하다면 다시 시행해야 한다.

살피건대 법례(法例)가 비록 이러하지만 인접한 다른 도의 수령에게

문서를 보내어 청했다는 말을 들은 바가 없고, 혹 청했다고 해도 수령의 부신(符信)을 차고 도의 경계를 넘는 것도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므로 올 수가 없다.

수령들의 업무평가서를 살펴보면, “검시를 피했으므로 마땅히 경고해야 한다”고 하여 그 성적이 중(中)으로 매겨지는 사람이 수없이 많은데, 검시를 왜 어려워하는가?

조사관이나 검시관이 된 수령이 판단하기 어려운 옥사가 있으면 자제나 친지들 가운데 정직하고 사리에 밝은 사람 하나를 골라 옥사가 일어난 고을에 미리 몰래 보내 사정을 조사하게 한 후, 수령이 그 고을에 가서 밤을 타서 그 사람과 만나거나 혹 서신으로 조사한 바를 전해 받은 후에 간악한 일이나 숨겨진 일을 적발하면 잘못 판단하는 허물이 없을 것이다. 늘 보면 조사관이나 검시관이 미리 몰래 조사시키지도 않고 데리고 간 아전을 시켜 은밀히 여론을 묻지만, 아전이 뇌물을 받고 청탁을 받아 중간에서 농간을 부리는 경우는 첫번째 조사나 검시에서는 잘못 판결하지 않았는데 두번째 조사나 검시에서 이유 없이 판결이 뒤엎어지고 옥사의 진상이 의심스러워지며 억울하게 걸린 자가 벗어날 수 없게 된다. 그리하여 옥사가 일어난 고을에 또다른 일이 일어나거나, 이웃 고을에서 조사하러 온 수령이 과오를 범하게 되니, 참으로 한탄스러운 일이다.

표류선(漂流船) 조사는 급하지만 어려운 일이니 지체하지 말아야 한다.

표류선을 조사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다섯 가지가 있다.

첫째, 외국인과의 예의는 마땅히 서로 공경해야 한다. 늘 보면 우리나라

라 사람은 저들의 짧은 머리와 좁은 옷소매를 보고서 마음속으로 그들을 업신여겨 접대할 때의 문답에 체모를 잃어 경박하다는 이름이 천하에 퍼져 있으니, 이것이 첫째로 조심할 일이다. 각별히 공손하고 충실하고 신의 있게 하여 큰 손님을 대하듯 해야 한다.

둘째, 우리나라 법에 표류선 안에 있는 문자는 인쇄본이거나 사본이거나를 막론하고 모두 초록하여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에 표류선 한 척이 수만 권의 책을 가득 싣고 무장(茂長) 앞바다에 정박하였는데, 이를 조사한 관리들이 의논하기를 “장차 이를 모두 초록하여 보고하는 일은 작은 새가 흙을 물어 바다를 메우는 일과 같다. 만약 그 가운데 몇가지만 골라 초록하면 반드시 엉뚱한 화를 당하게 될 것이다” 하고, 마침내 모래밭을 파고 모든 책을 물어버리니 표류인들은 크게 원통해했지만 어찌할 수가 없었다.

나의 친구 이유수(李儒修)가 그 뒤에 무장현감이 되어 모래밭에서 『삼례의소(三禮義疏)』 『십대가문초(十大家文鈔)』 같은 몇권의 책을 얻었는데, 아직도 물에 젖은 흔적이 있었다. 내가 강진에 도착하여 『연감유함(淵鑑類函)』 한 권을 얻었는데 이미 심하게 썩었기에 “이 책이 무장에서 온 것이 아니냐?”고 물었더니, 그 책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크게 놀랐다.

대개 세상일이란 것이 본래 힘이 미치지 못하여 이루지 못한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 산을 겨드랑이에 끼고 바다를 뛰어넘으라고 했을 때 신하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고 하여 정부에서 죄를 주면, 이것이 이치에 맞는 일이겠는가? 그런즉 마땅히 모든 서적을 진열하고 다만 책이름만을 기록하되 그 권수를 상세히 해두고, “싣고 다니면 소가 땀을 흘릴 만하고, 집에 쌓아두면 천장에 닿을(汗牛充棟) 정도로 많은 책을 갑자기 초록할 수 없어 책이름만을 기록하였다”고 보고하면 되지 않겠는가? 이 때문에

견책을 당하더라도 오직 웃음을 머금고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겠거늘, 도둑처럼 보물을 함부로 버린다면 그 외국인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오직 이치에 따르겠다고 마음먹고, 벼슬 떨어질까 겁내는 일이 없으면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셋째, 표류선을 조사하는 일은 반드시 섬에서 일어난다. 섬사람들은 본래 호소할 길이 없는 사람들인데, 조사하는 일에 따라간 아전들이 조사관의 접대를 빙자해 침탈을 마음대로 해 술과 향아리까지도 남기지 않는다. 표류선이 한번 지나가고 나면 몇개의 섬이 모두 망하기 때문에, 표류선이 도착하면 섬사람들은 반드시 칼을 빼어 들고 활을 겨누어 그들을 죽일 기색을 보여 도망가게 만든다. 또 혹시 바람이 급하게 불고 암초가 사나워 파선 직전에 있는 자들이 구원을 청해도 섬사람들은 침몰하도록 내버려둔다. 배가 침몰하고 사람이 죽고 나면 은밀히 모의하여 배와 화물을 불태워 그 흔적을 없앤다. 10여 년 전에 나주 지방의 여러 섬에서 이런 일이 여러 번 있었는데, 태워버린 염소가죽이 수만 벌이고 감초 단 것이 수만 곡(斛)이었다는데 불에 타고 남은 것이 있어서 내 눈으로 직접 보았다.

아둔한 수령들이 아전들을 단속하지 못해 나쁜 짓을 마음대로 하게 버려두니 백성들은 눈물을 흘리면서도 이런 짓을 해버린다. 해외의 여러 나라가 만약 이 일을 들으면 우리를 사람고기로 포를 떠 썰어먹는 나라로 여기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표류선을 조사하는 관리들은 마땅히 눈을 밝게 뜨고 엄하게 살펴서 아전들의 침학을 금지시켜야 한다. 이를테면 큰 집 한 채를 따로 빌려 가마솥을 늘어놓고 아전들을 한 집에 같이 있게 하며, 그들이 먹는 쌀이나 소금은 관에서 돈을 주고 사들여 날마다 배당해야 한다. 잘 계획하여 한톨의 쌀이나 한줌의 소금이라도 그곳 백성에

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좋은 것을 보고 실천하는 것은 작은 일도 그래야 한다. 지금 해외 여러 나라의 조선술이 많이 발전하여 운항에 편리하다.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인데도 조선술은 소박하고 고루하다. 표류선을 만날 때마다 그 선박을 상세히 그려두고 재목은 무엇을 썼고 배전의 판자는 몇장을 썼으며, 배의 길이와 넓이 그리고 높이는 몇 도나 되며, 배 앞머리의 구부리고 치솟은 형세는 어떠하며, 돛·돛대·상앗대·노·키 등의 모양은 어떠하며, 배의 구멍난 부분을 어떻게 메우는지 등의 배를 수리하는 법과, 익판(翼板)이 파도를 잘 헤치게 하는 기술은 어떠한가 등의 여러가지 신묘한 이치를 상세히 조사하고 기록하여, 그것을 모방할 것을 피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표류인이 상륙하면 그 배를 큰 도끼로 쪼개고 부수어 즉시 불태워 없애버리려 하니, 이것이 무슨 법인가? 뜻있는 선비가 이런 일을 말았으면 마땅히 이것을 명심해야 한다.

다섯째, 외국인을 대할 때에는 마땅히 동정하는 빛을 보여야 하며, 음식물 등 필요한 것은 신선하고 깨끗한 것을 주어야 한다. 우리의 정성에 그들도 감복하여 기뻐할 것이며 돌아가서 좋은 말을 할 것이다.

제방을 수리하고 성을 쌓는 일을 감독하게 되면 백성들을 위로하여 인심을 얻도록 힘써야 일을 성공시킬 수 있다.

옛날에 하천을 준설하거나 성을 쌓는 일은 모두 군현의 백성을 부역시켰고, 우리나라에서도 호수를 파거나 성을 쌓는 일은 각 고을에서 백성들을 동원하여 이 일을 돕게 하였다. 이때 훌륭한 수령은 백성들의 환심을

을 얻어 그들이 칭송하는 소리가 널리 퍼지게 할 수 있다. 늙고 여윈 사람은 부역을 면하여 돌아가게 하고, 굶주리고 넉넉한 사람을 구분하여 부담을 고르게 하며, 담배와 술을 주고 노래로써 일을 권하며, 부지런한 이를 칭찬하고 게으른 사람을 경계한다면, 백성들이 분발하여 공사가 빨리 완성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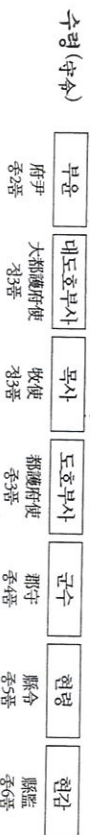
정백자(程伯子)가 현령이 되어 부역을 감독할 때 심한 추위와 뜨거운 햇빛 아래서도 가죽옷을 입거나 일산을 바치는 일이 없었다. 때때로 공사장을 돌아보아도 일꾼들은 그가 오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래서 사람마다 힘껏 일하여 언제나 기한 전에 일을 끝냈다. 선생의 기상이 맑고도 공손하여 속세 밖에 있는 것 같았으며, 일을 당하면 항상 미친한 사람들과 기거와 음식을 같이 하고, 웬만한 사람들은 감당하기 어려워하는 일에도 선생은 대처함에 여유가 있었다. 어느 뎨기는 일꾼들 가운데 밤중에 떠드는 사람이 많아서 한 사람이 놀라게 되면 여러 사람이 다투어 일어나고, 간악한 사람이 그 틈을 타 도둑질하는 일이 셀 수 없이 많았다. 선생이 이들을 균율로 다스리니 드디어 떠드는 사람이 없게 되었다. 공사가 끝나고 일꾼들이 해산할 때도 그 대열이 평상시와 같이 정연하였다.

조선시대의 지방행정조직

관찰사

觀察使

▲ 전국 8도의 행정장관. 감사(監司)라고 약칭하는데, 왕권을 대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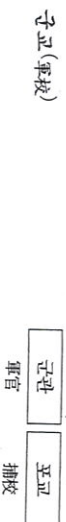


▲ 고을 크기와 품계는 차이가 있지만, 이들 모두는 관찰사의 직할을 받았으며 왕권을 대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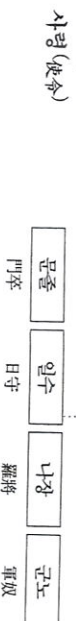


▲ 이속(吏屬): 수령의 행정사무를 보좌하는 중인 신분의 관속(官屬).

▲ 랑임(郞任): 각 고을마다 유력한 인사들로 구성되어 수령을 보좌하기도 하고 견제하기도 하는 행정(政廳)의 일원. 최수 1인 및 별감(別監) 2-3인이 있었다.



▲ 수령의 군사·경찰 업무를 보좌하는 관속.



▲ 문물 지키거나 심부름하거나 죄인을 모조하는 등의 일을 하는 관속.

로나
1하기
으나,
고대
종적
개는
이것
하였
다.

수

있
렸
다,